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26조에 의거 각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1학기 이상 등록한 사람
2. 종합시험 : 각 과정의 이수학점(석사학위과정 : 18학점, 박사학위과정 : 27학점, 통합과정 :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가.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18학점, 박사학위과정 27학점, 통합과정 45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 나. 특수대학원 : 18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사람
 - 다. 가, 나목의 경우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학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지원서를 학과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횟수 및 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연 2회 실시하고, 그 시기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다.

제5조(시험방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필기시험만으로 한다.
2. 시험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종합시험의 방법은 학과책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속 대학원운영위원회에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아래의 기관에서 인증한 소정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은 응시일 익일부터 소속 대학원 영어시험일까지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한다.
 - 가. 공인기관

구 분		영어영문학 이외 전공자	영어영문학 전공자	비고
TOEIC		700점 이상	750점 이상	석·박사 동일. 단, 한국어는 외국인에 한함
TOEFL	PBT	535점 이상	550점 이상	
	CBT	207점 이상	213점 이상	
	IBT	76점 이상	79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650점 이상	
IELTS		5.5 이상	6.0 이상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나. 본 대학교

구 분		면제기준	비고
대학원	영어강좌 프로그램	70점 이상	석·박사 동일
	영어 시험	60점 이상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은 지문을 한국어로 출제하고 영어로 답하게 할 수 있다.

5.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영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영어권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출제 및 채점위원) 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각 대학원의 강의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하고,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학과책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이 겸한다.

제7조(출제과목 및 범위)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출제과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고, 각 학위과정별 외국어 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되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2. 종합시험

전공영역의 전문지식과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학 중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시험하며, 석사학위과정은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2과목,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3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3과목에 걸쳐 출제한다.

제8조(합격기준) 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외국어 시험은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과목당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9조(합격인정 및 결과보고) ① 외국어 및 종합시험 결과는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합격이 인정된다.

② 각 대학원장은 시험의 시행 결과와 합격자 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 ③ (적용례)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5조 제3호를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